대학발전계획추진위원회규정 3-1-30

규정번호 3-1-30
제정일자 2018.2.5
최근개정 2026.3.23
개정차수 7차 개정
관리부서 기획평가팀

[규정명칭 변경 2022.8.8.]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리대학 발전계획의 수립, 추진, 점검 등을 위한 대학발전계획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22.08.08.)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 중・장기 발전계획 수립(개정 2022.08.08.)
2. 대학 중・장기 발전계획 추진, 점검 및 환류(개정 2022.08.08.)
3. <삭제(2022.08.08.)>
4. 기타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필요 사항(개정 2022.08.08.)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 한다.

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, 위원은 기획실장, 교무처장, 학생지원처장, 산학협력처장, 사무처장, AI・IR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우리대학 교직원 및 외부 전문가를 총장이 위촉할 수 있다.(개정 2023.03.30., 2026.2.6.)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,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(개정 2024.7.24.)

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(개정 2026.3.23.)

⑤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담당 업무부서 팀장으로 한다.

제4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3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.

제5조 <삭제(2022.08.08.)>

제6조(연구위원) ① 대학 발전계획 추진의 전문적인 조사·연구를 담당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연구 위원을 둘 수 있다.(개정 2022.08.08.)

② 연구위원은 제2조 각 호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교직원,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(개정 2022.08.08.)

③ 연구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 사항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.

④ 연구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7조(경비지원) 위원과 연구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운영세칙)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① 이 규정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'대학발전위원회규정'은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.(제1조, 제2조제1호~제4호, 제5조, 제6조제1항~제2항)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3조제2항)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3조제3항)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3조제2항)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(제3조제4항)